

2024년도 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5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 대상

○ 기 간 : 2024. 10. 1. ~ 12. 31.(2024년 4분기)

○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온·오프라인, 권익위 국민신문고 이첩

- 온라인(시장핫라인), 오프라인(우편·방문 등)

-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이첩 공익제보

□ 접수 결과

○ 2024년 4분기 총 52건 접수

[표 1] 2024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| 접 수 창 구 | 합 계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공 익 제 보 지 원 센 터 | 공직자비리신고 | 37 | 8 | 19 | 10 |
| | 공 익 신 고 | 13 | 1 | 6 | 6 |
| | 부 정 청 탁 | 2 | - | 1 | 1 |
| 국 민 권 익 위 원 회 | 국 민 신 문 고 | - | - | - | - |
| 합 | 계 | 52 | 9 | 26 | 17 |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| 경로 | 합계 | 공익제보지원센터 | | 국민권익위원회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온라인 (PC/모바일) | 오프라인 (우편/방문/팩스) |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/이첩 |
| 접수건수 | 52 (100%) | 52 (100%) | - | - |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○ 본청 소관 사무 제보 10건(19.2%), 본부/사업소 소관 7건(13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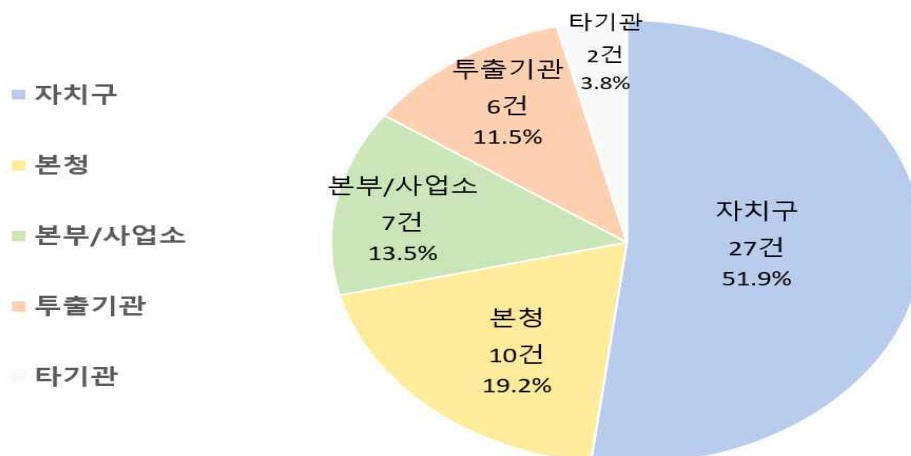
- 본청 공익신고 3건, 부패신고 7건
- 본부/사업소 공익신고 4건, 부패신고 3건

○ 그 외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 6건(11.5%), 타기관 2건(3.8%)

- 시 투자출연기관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4건, 일반민원 1건
- 서울시청 외 타기관 소관 공익신고 1건, 일반민원 1건

○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 27건(51.9%)

- 공익신고 6건, 부패 신고 10건, 일반민원 11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52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39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: 건)

| 총 계 | 공익제보 해당 39건(75%) | | 일 반*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부패신고 | 공익신고 | |
| 52 (100%) | 24 (46.2%) | 15 (28.8%) | 13 (25%) |

*일 반 : 공익제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소관 기관 감사실의 검토가 필요하여 소관 기관 이첩한 민원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의 범위

| 구 분 | 개 요 | 신고 대상 행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부패 신고 |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 |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 |
| 공익 신고 |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 | 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93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|
|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|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| 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|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세부내역(총 39건)

○ 부패신고 : 24건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소관기관 | 건 수 | 내 용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|
| 업 무 부 적 정 | 본 청 | 1 | 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 |
| | 본부·사업소 | 1 | |
| | 자 치 구 | 1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- | |
| | 타 기 관 | - | |
| | 소 계 | 3 | |
| 불 공 정 행 위 | 본 청 | - | 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|
| | 본부·사업소 | - | |
| | 자 치 구 | 1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- | |
| | 소 계 | 1 | |
| 복 무 | 본 청 | 1 | 초과근무/출장 수당 부정수령 등 |
| | 본부·사업소 | - | |
| | 자 치 구 | -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2 | |
| | 소 계 | 3 | |
| 기 타 | 본 청 | 5 | 공직자 외의 부패행위(공무원 아닌 자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) 등 |
| | 본부·사업소 | 2 | |
| | 자 치 구 | 8 | |
| | 투자출연기관 | 2 | |
| | 소 계 | 17 | |
| 총 계 | | 24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

○ 공익신고 : 15건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소관기관 | 건 수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국 민 체 육 진 흥 법 | 본 청 | 3 | 체육 종사자 관련 비위 |
| 도 로 교 통 법 | 자 치 구 | 2 | 공용차량 불법주차 |
| 개 인 정 보 보 호 법 | 본 부 / 사 업 소 | 1 | 업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|
| 건 축 법 | 자 치 구 | 1 | 불법증축 |
| 공 중 위 생 관 리 법 | 자 치 구 | 1 | 무등록 위생업소 |
| 근 로 기 준 법 | 본 부 / 사 업 소 | 1 | 건설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|
| 남 녀 고 용 평 등 법 | 투 자 출 연 기 관 | 1 | 성희롱 피해 후속조치 관련 |
| 도 시 정 비 법 | 자 치 구 | 1 | 재건축 불법홍보 |
| 병 역 법 | 타 기 관 | 1 |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|
| 유 도 선 법 | 본 부 / 사 업 소 | 1 | 선박 안전점검 요청 |
| 청 원 경 찰 법 | 본 부 / 사 업 소 | 1 | 청원경찰 복무위반 등 |
| 한 부모 가 족 지 원 법 | 자 치 구 | 1 | 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|
| 총 | 계 | 15 | |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,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4. 12. 31.기준)

□ 처리 내역(총 52건)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| 총 계 | 처리완료(7) | | 내부종결(25) | | | 진행중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처 분 (조치) | 개선 등 | 해당없음 | 민원안내 (보완요구, 제보요건 안내 등) | 취 하 | |
| 52 | 4 | 3 | 14 | 8 | 3 | 20 |

※ 개선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민원안내 : 증거 미첨부·피신고자 불특정으로 보완요구 등

※ 취하 : 타기관 소관 민원 2건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| 연 번 | 신고구분 | 신고 내용 | 처분기관 | 조치 내역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부패 | 보조금 사업자 업무부적정 | 자치구 | 시정, 환수 |
| 2 | 공익 | 건설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| 본부/사업소 | 시정지시, 노동청 통보 |
| 3 | 공익 | 무등록 위생업소 | 자치구 | 고발 |
| 4 | 부패 | 복지기관장 급여 부당수령 | 자치구 | 환수 |